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개정(안) 요지

□ 개요

군수품 품질경영업무 기본규정 개정(1차) 이후 업무수행간 추가 개정 소요 및 관련 규격 개정 등에 따른 위한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개정 사항임.

□ 개정 배경

○ DQMS 규격개정에 따른 연계조항 개정 필요

○ 단순품질보증형(I형) 품목 적용 대상 확대

○ 품보업무 처리절차 불명확 조항 명확화 필요

□ 주요 내용

○ 정부 품질보증활동 수행 관련 사항

- 단순품질보증형(1형) 품목 대상 확대
- 완제품 품질확인의뢰 시 업체의 서류제출 명확화
- 업체품보계획 검토 지연 시 처리절차 추가
- 합, 불합격품 처리절차 명확화

○ 국방경영시스템 규격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

-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실행조항 반영
  . 요구사항 추가 : 7항목, 수정 : 8항목(용어수정 등)

○ 기타 사항

- 대외기관 품질보증 용역업무 대상 및 근거 명확화
-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운영 및 구성 명확화
- 용어 통일 및 용어정의 추가

※ 세부개정내용 : 덧붙임

□ 세부 개정내용

구 분	개 정 내 용	비 고
<개정>	제7조(품질보증형태 분류) - 단순품질보증형(1형) 품목 선정기준 명확화 (기능과 구조가 단순품목, 민수품과 사용용도가 유사한 품질 안정 품목 추가) 제9조(품질보증 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) - 하도급계획 명확화 (관련조항과 연계 내용 통일화) 제13조(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접수) -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지연 시 처리절차 추가 제18조(제품확인감사) - 업체제출서류 명확화 (완제품 품질확인의뢰 시 품질보증서 포함) 제23조(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) - 표준용어 적용(DQMS 용어로 수정) (요구서 → 요구사항, 이행 → 실행) 제24조(합/불합격품 처리) - 납품 후 재고품에 대한 사용 승인 절차 명확화 제35조(대외 품질보증 용역업무) - 대외품질보증용역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 (정부부처, 각 군, 기관 및 업체→ 타 기관 및 업체) - 품질보증 기술용역사업 수행 근거 추가 ("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 규정" 적용) 제54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- 실무위원회는 "위원회 설치 및 운용규정"에 따라 실시 제56조(실무위원회의 운영)	○ I형 품목 확대 적용 ○ 완제품 품질확인의뢰 시 업체제출서류 명확화 ○ 실무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 추가

구 분	개 정 내 용	비 고
	- 실무위원회 차수관리방법 개정 기타 용어 통일(9, 10, 12, 28조) - 제품보증서 → 품질보증서 - 위험식별 및 관리방안 →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[별표 제1호] 용어정의 - 용어정의 추가 (30. 품질경영시스템 평가) [별표 제2-1호]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실행 조견표 수정 - DQMS 규격 개정(KDS 0050-9000-3)에 따라 관련 조항추가 및 수정사항 반영 (추가 7항목, 수정 8항목)	
<삭제>	제18조(제품확인감사) ②항 1. ~~구입품(원자재, 구입품, 하도급품) 및 가공품(중간조립, 최종조립)~~ 2. ~~완성품 및 최종수락 제시품(포장 및 표기)~~ [별표 제1호] 용어정의 26. ~~중부적합(Major Nonconformity)~~	정부확인감사 범위 중복 사항 삭제 국방품질인증관련 용어 삭제